

의안번호	제338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9년 12월 10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8
----------	-----

제출연월일 : 2019년 12월 10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정무부지사 명칭을 경제부지사로 변경하고, 행정·경제부지사 소관 사무를 명확히 규정하며, 경제통상국을 '경제'와 '산업'분야 전담국으로 분리 신설 하는 등 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기구 조정>

- 정무부지사 명칭변경 : 정무부지사 → 경제부지사 (안 제4조)
- 국 분리 신설 (안 제9조의2)
  - 경제통상국 → 경제통상국, 신성장산업국
- 신성장산업국 존속기한 : 2021. 12. 31.까지 (안 부칙 제3조)

### <분장사무 조정>

- 부지사 분장사무 조정 (안 제4조)
  - 행정부지사
    - 도 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경제부지사 소관 사무 제외)
    -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 지휘·감독
    - 정부, 국회, 언론, 사회단체 등과의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 등
  - 경제부지사
    - 경제통상국, 신성장산업국, 바이오산업국, 균형건설국,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 공항관련 업무 및 그 밖에 경제관련 부서 업무에 관한 사항
    - 의회, 정부, 국회, 언론, 정당, 경제단체 등과의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 등

- 신성장산업국 분장사무 신설 (안 제9조의2)
  - 반도체산업 육성 및 반도체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 차세대자동차 인프라 구축 및 드론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사항
  -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국 분리 신설에 따른 분장사무 이관 (안 제9조의2)
  - 미래신산업정책 발굴 및 육성·지원, 지방과학기술 진흥, 4차 산업혁명 육성·지원, ICT산업 육성·지원 및 에너지 관련 업무 등  
: 경제통상국 → 신성장산업국
-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분장사무 이관 (안 제13조의2)
  - 하천유역 종합치수계획,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재난안전실 → 환경산림국

#### <기타 조정>

- 바이오산업국 국 순서 신성장산업국 다음으로 조정 (안 제5조)
- 서울세종본부 사무소 위치 현행에 맞게 조정 (안 제56조의2)
  - 기존 : 서울특별시 관내 또는 도 본청
  - 조정 : 서울특별시 관내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사항”을 “사항(다만, 경제부지사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정부, 국회, 언론, 사회단체 등과의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3호로 한다.

### 1. 경제통상국, 신성장산업국, 바이오산업국, 균형건설국,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 공항관련 업무 및 그 밖에 경제관련 부서 업무에 관한 사항

### 2. 의회, 정부, 국회, 언론, 정당, 경제단체 등과의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

제5조 중 “농정국, 문화체육관광국, 균형건설국, 바이오산업국”을 “신성장산업국, 바이오산업국, 농정국, 문화체육관광국, 균형건설국”으로 한다.

제6조의2제17호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경제동향의 분석관리
2. 유통진흥, 소비생활 향상,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기업육성 및 자금·기술·판매지원·기업인 예우에 관한 사항
5. 공산품 품질관리 및 기업체 품질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7. 경제분야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8. 산업입지 계획·개발·지원·조성에 관한 사항
9. 일자리 창출, 고용안전,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10. 노사협력 및 화합에 관한 사항
11.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2. 국내외 시장개척 및 상품홍보, 통상진흥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신성장산업국) 신성장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신산업정책의 발굴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지방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ICT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 주력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6. 반도체산업 육성 및 반도체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7. 차세대자동차 인프라 구축 및 드론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사항
8.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9. 가스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10. 연탄·광업·자원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1.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13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3조의2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56조의2제2항 중 “도 분청”을 “세종특별자치시 관내”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신성장산업국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②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5항 중 “정무부지사”를 각각 “경제부지사”로 한다.

③ 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④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경제통상국장, 바이오환경국장”을 “신성장산업국장, 바이오산업국장”으로 한다.

⑤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⑥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신성장산업국장”으로 한다.

⑦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신성장산업국장”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⑨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경제환경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제환경 분과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	경제통상국, 신성장산업국, 바이오산업국,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경제자유구역청
------------	------------------	---

⑩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⑪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부지사) ① ----- ----- ----- -- <u>정무부지사</u> ----- ② (생략) 1. ----- <u>사항</u>  2. (생략) <u>&lt;신설&gt;</u>  3. (생략) ③ <u>정무부지사</u>----- ----- 1. <u>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u>  2. <u>의회·정부·국회·정당·사회단체 등과 관련되는 업무 협조</u>  3. <u>도정 홍보 및 언론기관 협조</u> 4. <u>경제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u></p>	<p>제4조(부지사) ① ----- ----- ----- -- <u>경제부지사</u> ----- ② (현행과 같음) 1. ----- <u>사항(다만, 경제부지사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u>  2. (현행과 같음) 3. <u>정부, 국회, 언론, 사회단체 등과의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u>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u>경제부지사</u>----- ----- 1. <u>경제통상국, 신성장산업국, 바이오산업국, 균형건설국,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 공항관련 업무 및 그 밖에 경제관련 부서 업무에 관한 사항</u>  2. <u>의회, 정부, 국회, 언론, 정당, 경제단체 등과의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u>  <u>&lt;삭제&gt;</u> <u>&lt;삭제&gt;</u></p>

현행	개정안
<p>써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p> <p>5. (생략)</p>	<p>3. (현행 제5호와 같음)</p>
<p>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p> <p>-----</p> <p>-----</p> <p>----- <u>농정국, 문화체육관광국,</u></p> <p><u>균형건설국, 바이오산업국</u>-----</p> <p>-----</p>	<p>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p> <p>-----</p> <p>-----</p> <p>----- <u>신성장산업국, 바이오산업</u></p> <p><u>국, 농정국, 문화체육관광국, 균형건</u></p> <p><u>설국</u>-----</p> <p>-----</p>
<p>제9조(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은 다</p> <p><u>음 사항을 분장한다.</u></p> <p>1. <u>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경제동향</u></p> <p><u>의 분석관리</u></p> <p>2. <u>유통진흥, 소비생활 향상, 물가안</u></p> <p><u>정에 관한 사항</u></p> <p>3. <u>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관</u></p> <p><u>한 사항</u></p> <p>4. <u>가스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u></p> <p><u>항</u></p> <p>5. <u>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u></p> <p><u>사항</u></p> <p>6. <u>경제분야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u></p> <p><u>한 사항</u></p> <p>7. <u>산업입지 계획·개발·지원·조성에</u></p>	<p>제9조(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은 다</p> <p><u>음 사항을 분장한다.</u></p> <p>1. <u>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경제동향</u></p> <p><u>의 분석관리</u></p> <p>2. <u>유통진흥, 소비생활 향상, 물가안정</u></p> <p><u>에 관한 사항</u></p> <p>3. <u>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관한</u></p> <p><u>사항</u></p> <p>4. <u>기업육성 및 자금·기술·판매지</u></p> <p><u>원·기업인 예우에 관한 사항</u></p> <p>5. <u>공산품 품질관리 및 기업체 품질</u></p> <p><u>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u></p> <p>6. <u>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u></p> <p><u>사항</u></p> <p>7. <u>경제분야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한</u></p>

현 행	개 정 안
<p><u>관한 사항</u></p> <p>8. <u>기업육성 및 자금·기술·판매지원·기업인 예우에 관한 사항</u></p> <p>9. <u>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u></p> <p>10. <u>노사협력 및 화합에 관한 사항</u></p> <p>11. <u>지역산업의 진흥·개발·육성 등에 관한 사항</u></p> <p>12. <u>IT·벤처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u></p> <p>13. <u>지방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u></p> <p>14. <u>연탄·광업·자원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u></p> <p>15. <u>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u></p> <p>16. <u>공산품 품질관리 및 기업체 품질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u></p> <p>17. <u>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u></p> <p>18. <u>국내외 시장개척 및 상품홍보, 통상진흥 등에 관한 사항</u></p> <p>19. <u>미래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u></p>	<p><u>사항</u></p> <p>8. <u>산업입지 계획·개발·지원·조성에 관한 사항</u></p> <p>9. <u>일자리 창출, 고용안전,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u></p> <p>10. <u>노사협력 및 화합에 관한 사항</u></p> <p>11. <u>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u></p> <p>12. <u>국내외 시장개척 및 상품홍보, 통상진흥 등에 관한 사항</u></p>

현행	개정안
<p><u>&lt;신설&gt;</u></p>	<p>제9조2(신성장산업국) 신성장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래신산업정책의 발굴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li> <li>2. 지방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li> <li>3. 4차 산업혁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li> <li>4. ICT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li> <li>5. 지역 주력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li> <li>6. 반도체산업 육성 및 반도체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li> <li>7. 차세대자동차 인프라 구축 및 드론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사항</li> <li>8.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li> <li>9. 가스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li> <li>10. 연탄·광업·자원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li> <li>11.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li> </ol>
<p>제13조 (생략)</p>	<p>제10조 (현행 제13조와 같음)</p>

현행	개정안
제10조 ~ 제12조 (생략)	제11조 ~ 제13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p>제13조의2(환경산림국) 환경산림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4. (생략)</p> <p>&lt;신설&gt;</p> <p>5. ~ 9. (생략)</p>	<p>제13조의2(환경산림국) 환경산림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u></p> <p>6. ~ 10. (현행 제5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p>
<p>제56조의2(설치) ① (생략)</p> <p>② -----</p> <p><u>도 본청</u>-----</p>	<p>제56조의2(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u>세종특별자치시 관내</u>-----</p>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2(시·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① 시·도는 별표 1에 따른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실·국·본부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⑤ (생략)